

충청북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(안)

제안이유

- 실업계 사립학교 학생의 실험, 실습용에 직접사용하는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도세를 면제하프로서
- 산업인력 양성에 기여코자 함.

주요골자

- 면제대상 : 학교법인이 학생의 실험, 실습용에 직접사용하는 차양, 중기, 입목, 항공기
- 면제세목 : 취득세, 등록세, 면허세
- 적용시한 : 1994년 12월 31일까지

근거법령

-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내지 제9조
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-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.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전문위원 민귀식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참 조)